

◇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을 개정이유

및 주요내용

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,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신청 시 관계 기관 간에 효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시·도지사는 산업자원부장관·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를 대신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정부의 청년고용증진시책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여 미성년자도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노 무 현 인

2006년12월26일

국무총리 한 명 속

국무위원 정 세 균
산업자원부장 관

●법률 제8086호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創業된 中小企業에 대한 投資를 촉진”을 “성장 기반을 조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7호 중 “施設 및 場所 등의 지원을 제공함을”을 “시설·장소의 제공과 경영·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投資 또는 融資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.”를 “투자·출연·보조·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5조 제목 중 “제공 등”을 “제공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

다.

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) ①창업보육센터를 설립·운영하는 자(설립·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“창업보육센터사업자”라 한다)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

가.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 또는 계측기기 등의 장비

나.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

2. 경영학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 중 2인 이상을 확보할 것

3.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·「지방재정법」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5조의3(창업교육)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, 대학생 및 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의4(창업대학원의 지정 등) ①중소기업청장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 중에서 창업분야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(이하 “창업대학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중소기업청장은 창업대학원의 지정·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해외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

제8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창업투자회사가 투자회수·경영정상화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8조의3 중 “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. 제8조의2 후단의 규정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

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”를 “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. 다만,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한 창업투자회사는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경우에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외투자 한도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 제8조의2 후단의 규정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創業投資會社”는 이를 “創業投資組合”으로 본다.”를 “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창업투자조합이 투자회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투자의무이행 유예기

간을 부여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,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창업투자조합재산의 관리 및 운용) ①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조합재산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창업투자조합재산의 보관을 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에 위탁할 것
2. 수탁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을 것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.

1. 창업투자조합재산의 보관 및 관리
2. 업무집행조합원의 창업투자조합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

③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조합재산으로 「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법령 제정·개정시의 협의)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, 창업자의 공장에 대한 「건축법」 제8조제1항의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사용승인과 관련되

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27조제2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4.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
제32조제1항제3호 중 “제12조의2”를 “제12조의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은 제8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.

제3조(창업투자조합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 이후 결성된 창업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4제2항제5호 본문 중 “제5조제2항”을 “제5조의2제1항”으로 하고,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“第5條第2項”을 “제5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②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中小企業創業支援法 제5조제2항”을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③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제5조제2항”을 “제5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④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第5條第2項”을 “제5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◇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이유

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교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여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의 목적 추가(법 제1조)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의 목적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추가함.

나.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(법 제2조항 및 법 제5조의2제2항 신설)

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경영·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창업교육 등 지원시책(법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)

중소기업청장은 청소년, 대학생 및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창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, 창업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창업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라.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해외투자 여건 개선(법 제7조제7호 및 제8조의3)

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일부 개선하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를 도모함.

마. 창업투자조합재산의 관리 등(법 제12조의2 및 제27조제2항 제2호의4 신설)

자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 집행사원은 조합재산의 보관을 「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」에 따른 수탁회사에 위탁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창업투

자조합의 등록을 중소기업청장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함.

바. 관계 법령 제·개정시 사전협의를 관한 규정(법 제22조의2 신설)

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승인, 창업자의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·개정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특허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노 무 현 인

2006년12월26일

국무총리 한 명 숙

국무위원
산업자원부장관 정 세 균

●법률 제8087호

특허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

특허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.